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 - 102호

**2016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구분	채용 예정 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원	필 기 시 험 과 목
합 계	8개 분야	8개 분야	83	
공개경쟁 채용	지방 소방사	소 방	남자 29 여자 6	(필수)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차량정비	남자 9	(필수)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 분야 전공	남자 3	
	지방 소방사	구 조	남자 28	
경력 경쟁 채용	지방 소방교	구급상황관리	남자 2	(필수)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선택)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소방항공 (헬기정비)	남자 1	
		소방항공 (헬기조종)	남자 2	
		화재 조사	남자 1 여자 1	
합 계	지방 소방장	화재 조사	남자 1 여자 1	(필수)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2. 시험시간**

- 공개 경쟁 채용 : 10:00~11:40(100분)
- 경력 경쟁 채용 : 10:00~11:00(60분)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시험문의 : 인천광역시청 인사과(☎032-440-2533~6) 및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32-870-3012~4)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1]의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을 참고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 :
  -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1, 화학1, 생명과학1, 지구과학1, 수학은 수학1,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1에서 출제
- 경력경쟁채용(지방소방사)하는 경우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 언어 등으로 함.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 참조)

**2. 시험방법**

- 가.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 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2]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단, 구급상황관리 및 화재조사 분야 체력시험 미실시)

**\*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4]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 방법을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임의허여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라.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점,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 전 적성검사 실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정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정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상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정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도 당면처위,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할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임용결정사유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간봉이상의 정채처분을 받은 자

나. 거주지 제한

공개 경쟁채용시험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및 거주 불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주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지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이 없음.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5. 12. 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6. 12. 31.

※ 항공조종사 또는 항공정비사 : 23세 이상 40세 이하(1975. 1. 1. ~ 1993. 12. 31.)

※ 응시사항 연령의 연장

「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부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부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분야별 자격 및 경력(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채용분야	용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구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li> <li>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li> <li>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 해군해안구조대(SSU), 해방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 2년임대, 헌병특정대</li> <li>※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상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li> </ul>
회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분야 비사회위 이상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1년 이상 연(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전기분야 : 전기과,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li> <li>회계분야 : 회계과, 응용회계과, 회계공학과, 정밀공업회계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li> <li>- 기계분야 : 기계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li> <li>* 유사 학과 : 해양학과, 중(학)정이 발행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li> </ul>
화학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화학분야 :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li> <li>* 유사 학과 : 해양학과, 중(학)정이 발행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li> </ul>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공법」 제26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중조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경과한 자</li> <li>최근 2년 이내 비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li> <li>-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li> <li>- 「항공법」 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서를 받은 자</li> <li>- 회전의항공기 조종자격이 총 1,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중 정조종사로 500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자</li> <li>※ 항공법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li> <li>※ 항공법 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li> </ul>
정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공법에 의한 회전의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li> </ul>

채용분야	용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자동차 정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능성,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li> <li>※ 자동차 정비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li> <li>- 소방차량(엔프차, 굴절,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정차량 제조정비업</li> <li>-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li> </ul>
구급 상황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li> <li>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4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 경력증명서 제출(필기시험 합격 후)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함.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목이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종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3. 2(수) ~ 3. 4(금) (09:00 ~ 21:00) △ 취소기간 : 3. 2(수) ~ 3. 11(금)	필기시험	3. 29(화)	4. 9(토) <small>단 소방항공분야는 4.16(목)</small>	5. 2(월)
	체력시험	5. 2(월)	5. 12(목)	5. 18(수)
	신체검사	5. 18(수)	5. 23(월) ~ 5. 24(화)	6. 7(화)
	면접시험	6. 7(월)	6. 23(목)	7. 8(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에서 링크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교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4.5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명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정서류,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6. 시험에 있어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치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함.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지역중 소지자 가산점(공개행정재용시험만 해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지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세부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내역 : [붙임5])

가점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종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화재사 3. 시인물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종 기사 2. 5급 또는 6급 화재사 3. 화재사·운행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종 산업기사·기능사 2. 소방선박조종사, 접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3급
사무관리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자격종(면허종)과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정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정하고, 자격종(면허종) 기점과 사무관리 기점은 합산하여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된 유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존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존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함.
- 부정행위자(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032-440-2533~6) 및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32-870-3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 1-1]**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3)

□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선택과목
필수과목	신체과목	
국어, 한문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비고
1.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2.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소방시설공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붙임 1-2]**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5)

**1. 일반분야**

구분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지방소방장 지방소방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2. 소방분야 및 항공분야의 경우**

구분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지방소방위 이하 (항공분야)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계,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안전 중 1과목
지방소방사 (소방분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비고
1. 위 표 제1호에서 일반분야는 위 표 제2호의 소방분야 및 항공분야 외의 경력 경쟁채용등으로 한다.
  2. 위 표 제1호에서 소방사·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필수 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3.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붙임 1-3]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의 발전 과정</li> <li>-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li> <li>-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li> <li>- 소방차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li> <li>-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li> <li>-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감정)</li> </ul>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li> <li>-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li> <li>- 위험물 안전관리</li> <li>- 구조·구급 행정관리의 구조·구급 활동</li> <li>-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li> </ul>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의 특징과 유형</li> <li>-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li> </ul>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li> <li>- 긴급구조</li> <li>-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li> </ul>
	3)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치</li> <li>- 연소의 조건 및 형태</li> <li>- 발화의 조건 및 과정</li> </ul>
연소이론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의 정의</li> <li>- 연소 가스</li> <li>-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li> <li>-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li> </ul>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발의 조건</li> <li>-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li> <li>-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li> <li>- 폭연과 폭굉</li> <li>- 가스·분진·분해·분해 폭발</li> <li>- BELVE 등 폭발 관련 내용</li> </ul>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정의</li> <li>-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li> </ul>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li> <li>-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li> </ul>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li> <li>-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li> </ul>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li> <li>-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li> </ul>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li> <li>- 소화 방법(냉각·질식·채기·부축제 효과)별 소화 수단</li> </ul>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li> <li>-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li> <li>-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li> <li>-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li> <li>-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li> </ul>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li> <li>-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li> <li>-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li> <li>-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li> <li>-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li> <li>※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li> </ul>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약력 (kg)	남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여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여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앞어깨높이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여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계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여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참조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붙임4]와 같습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인천광역시에서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부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부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과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부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응적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부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부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요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금성 또는 만성의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 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부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I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1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드로스타노론 (drostanolone)
- ▶ 메티놀론 (methenolone)
- ▶ 메타스테론 (methasterone)
-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3-one)
- ▶ 스타노졸롤 (stanozolol)
- ▶ 1-테스토스테론 (1-testosterone)
-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클렌부테롤(Clenbuterol)

#### 2. 이뇨제 : 총 3종

-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hydrochlorothiazide)
- ▶ 클로로티아지드 (chlorothiazide)
- ▶ 푸로세마이드 (furosemide)

1) 대사물질 : 생화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 3. 흥분제 : 총 3종

- ▶ 메틸헥산아민 (methylhexanamine, dimethylpentylamine))
- ▶ 메틸 에페드린 (methylephedrine)
- ▶ 에페드린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 4. 마약류 : 총 11종

- ▶ 부프레노르핀 (Buprenorphine)
- ▶ 덱스트로모라미드 (dextromoramide)
- ▶ 헤로인 (diamorphine, heroin)
- ▶ 펜타닐 (fentanyl) 및 유도체
- ▶ 히드로모르폰 (hydromorphone)
- ▶ 메타돈 (methadone)
- ▶ 모르핀 (morphine)
- ▶ 옥시코돈 (oxycodone)
- ▶ 옥시몰론 (oxymorphone)
- ▶ 펜타조신 (pentazocine)
- ▶ 페티딘 (pethidine)

### II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